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2. 2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2년 2월 7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2년 2월 16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위원회(2012. 2. 23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 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오승환 )

#### 가. 제안이유

- 2012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

#### 나. 주요골자

-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2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30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30명을 상제 증원
  - 1) 일반직 계 : 1,028명 → 1,058명( 증 30명)
  - 2) 기능직 계 : 243명 → 213명( 감 30명)
-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(비율) 조정

1)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 조정(안 제3조 제2항 별표 2)

- 일반직

- 7급 : 31% 이내 → 32% 이내(증 1%)
- 8급 : 29% 이내 → 30% 이내(증 1%)
- 9급 : 11% 이상 → 9% 이상(감 2%)

-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는 1,028명에서 1,058명으로, 6급이하를 960명에서 990으로, 기능직계를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

(안 제4조 별표 3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이 현 영)

- 이 개정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개정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임용 시험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자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중 2012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30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일반직 정원으로 30명을 상계 증원

- 일반직 정원 : 1,028명 → 1,058명 (증 30명)
- 기능직 정원 : 243명 → 213명 (감 30명)

- 안 제3조제2항 별표 2에서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율 조정

▷ 일반직 공무원

- 7급 : 31% 이내 → 32% 이내 (증 1%)
- 8급 : 29% 이내 → 30% 이내 (증 1%)
- 9급 : 11% 이상 → 9% 이상 (감 2%)

- 안 제4조 별표 3에서 6급이하 일반직 정원이 960명에서 990명으로 30명 증  
원되어 일반직계가 1,028명에서 1,058명으로 변경되었으며 또한 기능직계가  
30명 감소되어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되었음
- 검토결과 이 개정 조례안은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상위법이 개정되어 일반직  
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 간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됨에  
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 
직무분야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 
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12. 7. 7일 필기시험과 8월  
면접시험을 통하여 9월에 일반직으로 임용되면 지방공무원의 정보화 역량  
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  
전환되어 우리구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 
판단되며 그 밖에 법체제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04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2. 2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2012년도 기능직 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에 대해 직급별 정원채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기능직 공무원 사무직렬 중 2012년에 일반직 전환 가능인원 30명을 기능직 정원에서 줄이고 대신 일반직 정원으로 30명을 상계 증원.

○ 일반직 계 : 1,028명 → 1,058명 (증 30명)

○ 기능직 계 : 243명 → 213명 (감 30명)

나.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비율) 조정

1)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비율 조정(안 제3조제2항 별표 2)

- 일반직

·7급 : 31% 이내 → 32% 이내 (증 1%)

·8급 : 29% 이내 → 30% 이내 (증 1%)

·9급 : 11% 이상 → 9% 이상 (감 2%)

다.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는 1,028명에서 1,058명으로, 6급이하를 960명에서 990명으로, 기능직계를 243명에서 213명으로 변경  
(안 제4조 별표 3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
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3) 「지방공무원법」 제4조, 제27조

4)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, 같은 법 부칙(제23093호, '11. 8.22.)

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필요 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 : 생략

※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호및제2호

(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사무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및 제4조과 관련된 [별표 2], [별표 3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

**- 일반직공무원**
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<b>기준비율</b>	1%이내	7%이내	21%이내	32%이내	30%이내	9%이상

- 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
 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**- 기능직**

구 분	6급	7급	8급	9급
<b>기준비율</b>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**- 별정직**
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<b>기준비율</b>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
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

#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

기관별 직급별	총 계	본 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83	1,283			
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<b><u>1,058</u></b>	<b><u>1,058</u></b>			
3급	1	1	-	-	-
4급	7	5	1	1	-
5급	60	29	2	11	18
6급이하	<b><u>990</u></b>	<b><u>990</u></b>			
별정직계	11	11			
기능직계	<b><u>213</u></b>	<b><u>213</u></b>			



□ 조례 제3조 [별표 2] 변경안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	개 정 안						
<b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</b>							<b>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</b>						
<b>- 일반직공무원</b>							<b>- 일반직공무원</b>						
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	구 분	4급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<b>31%이내</b>	<b>29%이내</b>	<b>11%이상</b>	기준비율	1%이내	7%이내	21%이내	<b>32%이내</b>	<b>30%이내</b>	<b>9%이상</b>
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							비고 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, 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						
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	2.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
<b>- 기능직</b>							<b>- 기능직</b>						
구 분	6급	7급	8급	9급	구 분	6급	7급	8급	9급				
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기준비율	5%이내	20%이내	56%이내	19%이상				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	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
<b>- 별정직</b>							<b>- 별정직</b>						
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구 분	5급상당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		
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기준비율	0%	38%이내	38%이내	24%이상				
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	비고 : 동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						

□ 조례 제4조 [별표 3] 변경안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	개 정 안					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					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	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구의회 사무국	보건소	동
총계	1,283	1,283				총계	1,283	1,283			
정무직	1	1				정무직	1	1			
일반직계	<b>1,028</b>	<b>1,028</b>				일반직계	<b>1,058</b>	<b>1,058</b>			
3급	1	1	-	-	-	3급	1	1	-	-	-
4급	7	5	1	1	-	4급	7	5	1	1	-
5급	60	29	2	11	18	5급	60	29	2	11	18
6급이하	<b>960</b>	<b>960</b>				6급이하	<b>990</b>	<b>990</b>			
별정직계	11	11				별정직계	11	11			
기능직계	<b>243</b>	<b>243</b>				기능직계	<b>213</b>	<b>213</b>			